



의안번호

제41호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제 출 자	논산시장
제출연월일	2018. 7. 12.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의안 번호	제41호
----------	------

제출연월일 : 2018. 7. 12.

제 출 자 : 논 산 시 장

## 1. 제안이유

-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등 규정(안 제1조~제4조)
- 나.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다. 청년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7조)
- 라. 청년정책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마.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0조)
- 바. 예산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지방자치법』 제 22조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참조
-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권고안 반영

가) 제6조(적용대상)에서 청년은 정책의 대상자이자 당사자 집단으로 성별이나 연령의 차이에 의해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람들이 고려되어야 함

: 권고안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 하되, 연령·성별 간 균형있게, 청년정책 사업의 ~ 적용한다. 라고 내용 반영

나)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제3항에서 정책 책임자는 청년으로 대표되는 집단의 다양한 사람들이 고려되도록 추진의식을 반영 하여야 함

: 권고안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제3항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라고 내용 반영

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제4항제1호에서 위원회는 다양한 당사자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에서 ‘경험이 있는’ 으로 반영하여야 함

: 권고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제4항제1호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으로 내용 반영

3) 규제심사: 규제심사 대상 아님

4)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18. 02. 15. ~ 03. 07.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5) 충청남도 소관실과: 미래정책과

## □ 조례안

논산시 조례 제 호

### 논산시 청년지원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권익 보호와 자립기반 형성을 위한 책무와 청년 정책의 수립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사회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사회·교육·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② 논산시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3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령·성별 간 균형있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

제7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3.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
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청년 인재가 양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거나 용역·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청년지원과 관련한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어느 한 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서기는 청년정책업무 담당이 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위원회 제적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8조(청년네트워크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

된 청년네트워크를 들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는 제7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발굴하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경제·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  
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  
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  
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사업  
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

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

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

나. 청년시설의 설치, 보수·보강 및 시설·환경 개선 지원사업

제20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  
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  
하지 아니한 사항은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른 청년시설의 입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논산시에서 활동하는 만18세에서 만39세 이하의 개인 및 단체(대표자)

2. 그 밖에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발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 하는 사람

제21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9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성 명
입 안 자	전 략 기 획 실 장	한 성 환
	시 정 기 획 팀 장	허 원
	담 당 자	박 종 혁 (746-5024)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제15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비용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위촉위원)에 대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하기 위함.

**나. 추계결과**

- 2018년도

구 분	산출기초	금액(천원)
논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0명 × 2회 × 100,000원	2,000

※ 자원조달방안 : 시비

**3. 작성자**

**전략기획실장 한 성 환**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시 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세 출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201-01 사무관리비							
○ 운영수당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재원 조달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지방세	2,000	2,000	2,000	2,000	2,000	1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참고 2

## 청년정책관련 도내 타 시군 현황

### □ 담당부서 현황

- 전담팀 2(아산·당진)                      ○ 인구팀 4(보령·계룡·금산·홍성)
- 인구+청년팀 2(서산·부여)              ○ 일자리팀 4(천안·공주·서천·청양)
- 기획팀 3(논산·예산·태안)

### □ 조례제정 : 8개시군

(‘18. 2. 6.현재)

시·군명	담당부서(팀명)	조례명(제정일자)	비고
천안시	일자리창출과 (청년일자리팀)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2017.11.21.)	
공주시	기업경제과 (일자리육성팀)	-	
보령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아산시	정책기획담당관 (청년정책팀)	아산시 청년 기본 조례(2017.05.15.)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	-	
논산시	전략기획실 (기획팀)	-	
계룡시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	-	
당진시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	당진시 청년 기본 조례(2017.05.30.)	
금산군	기획감사실 (지역인구정책팀)	금산군 청년지원 조례(2017.09.29.)	
부여군	미래전략담당관 (인구청년정책팀)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2016.08.12.)	
서천군	지역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2017.02.28.)	
청양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	청양군 청년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2017.04.18.)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인구정책팀)	홍성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2017.05.30.)	
예산군	기획실(기획팀)	-	
태안군	기획감사실 (기획팀)	-	